

1. 개정이유

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, 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배수성·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도로법」이 개정(법률 제19973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,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, 배수성·저소음포장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배수성·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도로의 소음 기준 신설(안 제29조제3항)
- 나. 배수성·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신설(안 제29조제4항)
- 다.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신설(안 제4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15. ~ 5. 26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8조 및 제50조”를 “제48조, 제50조 및 제50조의2”로 한다.

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1에 따른 도로의 소음 관리기준을 말한다.

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배수성·저소음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할 것
2.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·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일 것
3. 그 밖에 배수 기능 확보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

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방음판 재질 및 방화성능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」을 준수할 것
2. 그 밖에 방음판의 난연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도로법」 제47조의2,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8조, 제50조 및 제50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9조(포장) ①·② (생략)	제29조(포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1에 따른 도로의 소음 관리기준을 말한다.
<신 설>	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배수성·저소음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잔골재율을 낮춰 골재 간극률과 공극률을 높인 투수 성능을 가진 다공질의 아스팔 트 혼합물을 사용할 것

제43조(환경시설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2. <u>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</u> <u>·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을</u> <u>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</u> <u>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</u> <u>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일</u> <u>것</u> 3. <u>그 밖에 배수 기능 확보 및</u> <u>소음 저감을 위하여 국토교통</u> <u>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</u> <u>을 준수할 것</u> 제43조(환경시설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</u> <u>터널의 방음판 재질 및 방화성</u> <u>능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「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</u> <u>기준」을 준수할 것</u> 2. <u>그 밖에 방음판의 난연 성능</u> <u>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</u> <u>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</u> <u>준수할 것</u>
--	---